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해관의 세금 비용 전자지불 업무절차**  **간소화에 관한 공고**  해관총서공고 2017년 제44호  전국 해관의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, 통관 효율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해관 세금 비용 전자지불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해관 현장에서 세금납부서(이하 ‘납세증명서’) 를 출력하여 세금을 실질 공제하는 처리절차를 폐지한다.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 1. 수출입 기업 및 단위가 해관 세금비용 전자지불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선택할 경우, 세금의 사전 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, 해관통관업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금 실질 공제 통지를 발송하며, 세금 공제 및 납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통관문서가 통관 조건에 부합될 경우, 시스템에서 자동 통과시킨다.  2. 화물통관 후, 수출입 기업 및 단위는 해관 현장에서 납세증명서 제1련을 수령할 수 있다.  3. 재정-세관-국고-상업은행간 횡적 연합 네트워킹을 시행하고 있는 시범지역 이외에서 세금 비용 전자지불에 참여하는 상업은행은 해관총서 2011년 17호 공고 규정에 따라 해관과 납세증명서 제2-5련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, 세금의 국고 입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방지한다.  4. 해관 세금 비용 전자지불의 기타 사항은 현행과 같이 해관총서 2011년 17호 공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  본 공고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실시한다. 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.  해관총서  2017년 9월 19일 |  | **关于简化海关税费电子支付作业**  **流程的公告**  海关总署公告2017年第44号  为深入推进全国海关通关一体化改革，进一步提高通关效率，海关总署决定简化海关税费电子支付作业流程，取消现场海关通过打印税款缴款书（以下简称“税单”）触发税款实扣的操作。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：  　　一、进出口企业、单位选择以海关税费电子支付方式缴纳税款的，税款预扣成功后，海关通关业务系统自动发送税款实扣通知，税款扣缴成功且报关单符合放行条件的，系统自动放行。  二、货物放行后，进出口企业、单位可到现场海关领取税单第1联。  三、除实现财关库银横向联网的试点地区外，参与税费电子支付的商业银行应按海关总署2011年17号公告规定与海关办理税单第2—5联交接手续，防止税款延压入库。  　　四、海关税费电子支付的其他事项仍按海关总署2011年17号公告规定办理。  本公告自2017年9月21日起实施。  　　特此公告。  　　海关总署  　　2017年9月19日 |